

시간급

6,470원

2017년
최저임금

2017. 1. 1 ~ 2017. 12. 31 적용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액은 얼마 인가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입니다.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다만,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주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최저임금

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등)
-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등)
- ③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근로자가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 44시간인 경우(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는 226시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